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높은위험]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벨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벨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 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벨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3.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11년 5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1년 6월 7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가능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 서면문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상 세 목 차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I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IV. 요약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동 간이투자설명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간 이 투 자 설 명 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66779
A	66776
C1	66777
C2	28704
C3	28705
C4	28706
C5	28708
I	72756
F	80298

2. 모집예정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2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투자신탁 존속기간 : 별도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 (1)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2)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주식형)
- (3)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4)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5) 특수형태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 구조에 관한 사항>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의 관한 사항>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 목적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전세계 이머징마켓의 상장 혹은 등록되거나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및 이들 국가의 정부, 정부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발행한 우량 채권 등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해당 모집합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전략 및 투자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모집합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형 구조에 관한 사항>

종류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A	2007년 3월 26일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C1	2007년 3월 26일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C2	미설정	종류C1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C3	미설정	종류C2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C4	미설정	종류C3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C5	미설정	종류C4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I	2007년 8월 21일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개인 고객, 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의 법인 고객
F	2008년 3월 4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내지 제18호는 제외), 10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변액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에 따라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 84 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26 층 (대표전화: 02-3783-0500)

<모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및 투자 자문>

해당 펀드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해외 위탁집합투자업자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업무 위탁범위 및 투자자문의 범위	1)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의 위탁 -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 조사분석업무 / 단순 매매주문업무 2) 투자자문 업무 - 원화표시 투자재산 투자대상 선정과 관련한 조언을 하는일 - 투자신탁재산을 위하여 투자정책을 조언하고 외국 투자대상지역에 대한 투자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주1) 이 투자신탁의 원화자산에 대한 운용은 해외투자자문회사로부터 자산배분 및 매매의사결정과 관련된 조언을 받아 슈로더투자신탁(주)가 운용을 담당합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1) 당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가.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의 수익증권 등에의 투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

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자산 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 가능

(2)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주식	30% 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2) 채권	60% 이하	<p>가. 전세계 이머징 마켓(MSCI EM 지수에 포함되는 국가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등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상</p> <p>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5-30 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위와 같은 성질을 구비하고 있는 것</p> <p>가. 전세계 이머징 마켓(JPM EMBI 지수에 포함되는 국가 등)에서 발행된 채권 중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등급 이상을 받은 채권 등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하</p>

* 상기 투자대상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중 주로 투자하는 자산에 대하여 표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1) 투자 목적

- 가.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이머징마켓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운용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의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나. 당해 투자신탁의 참조지수: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자산 배분을 통한 토탈리턴을 추구하며, 이를 위하여 이머징 국가의 주식 및 채권시장 전망에 따라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특성을 반영하는 적절한 참조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판단시 참조지수가 없는 투자신탁인 점을 고려하여 유의하셔야 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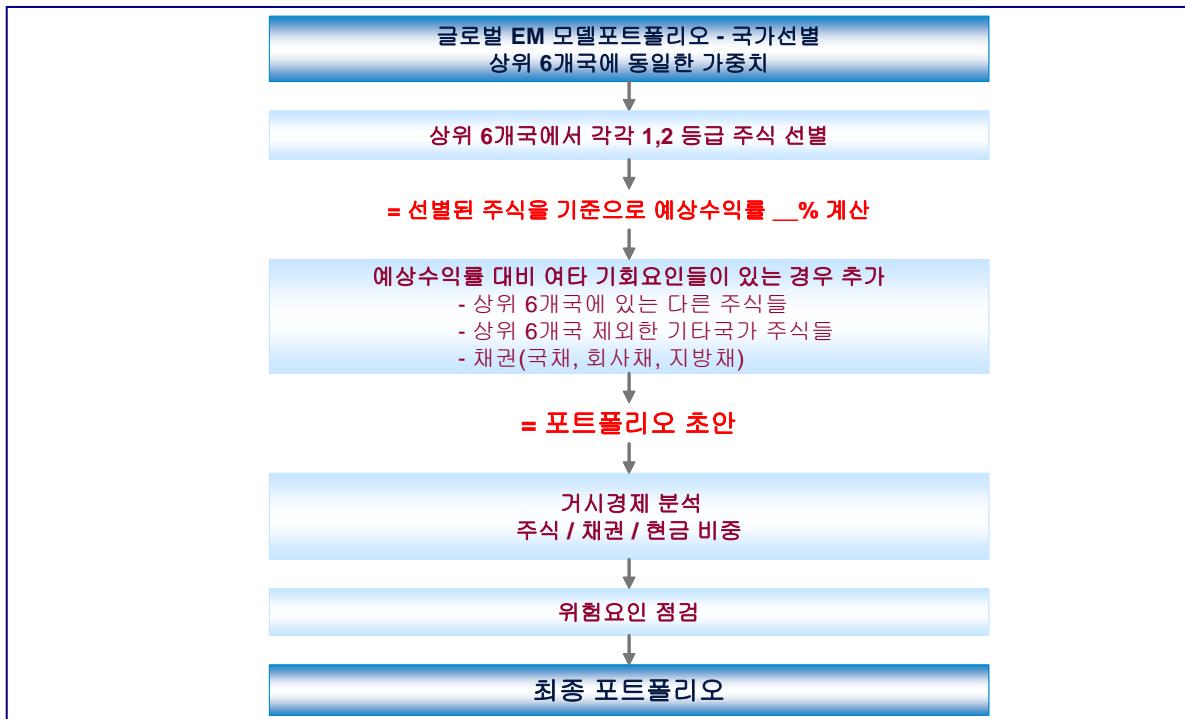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투자자산을 모투자신탁인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인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은 전세계 이머징마켓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는 토클 리턴(Total Return)의 추구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자산배분전략을 통해 전세계 이머징마켓의 주식 및 채권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은 분기별로 거시경제의 분석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주식, 채권, 현금에 대한 자산배분비율을 조정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종목 선정은 MSCI Emerging Market Index(이머징마켓지수) 편입종목 중에서 슈로더의 내부 리서치를 기초로 전망이 가장 좋은 국가를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채권의 경우 주식 대비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거나, 주식의 위험을 경감시킬 목적 등으로 투자되며, 투자대상은 JPM EMBI(이머징마켓 채권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에 주로 투자하게 됩니다.

<모투자신탁의 주요 운용전략>

- 주식포트폴리오의 경우, MSCI EM Index(이머징마켓지수) 포함 개별 이머징 마켓 시장에 대한 계량적, 비계량적 분석을 통해 밸류에이션 및 성장성 등을 근거로 양호한 시장전망을 가진 상위 6 개국가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 주식을 위주로 투자하되, 기타 국가의 경우에도 양호한 전망을 가진 주식을 포함하여 포트폴리오 구성
- 채권포트폴리오의 경우, JPM EMBI(이머징마켓 채권지수) 포함 이머징마켓 채권 중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에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 거시경제의 분석을 통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주식, 채권, 현금에 대한 자산배분비율 조정
- 슈로더의 철저한 위험관리 절차를 준수
 - 종목당 10%, 개별 국가당 20% 초과 투자 금지
 - 5%이상을 보유한 종목의 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40%미만이 되도록 조정

<모투자신탁의 운용프로세스>



나. 위험 관리

① 위험관리방법 및 체계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 "BIGS")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차원의 트레킹에러, 베타수준, 종목 집중도, 스타일 분포, 시장대비 성과 분석 등 다각적인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환헤지 방법

이 자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두자신탁 내 환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 평가액의 미달러화 환산금액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80\% \pm 20\%$ 수준에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해 헤지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운용사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혼란 발생시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헤지거래가 일시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지 대상금액과 헤지수단의 거래단위의 차이로 인해 일부 투자금액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외화자산 표시통화와 헤지통화간의 상이로 인해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에 따른 환헤지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주 1) 환헤지는 외화자산투자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통화선물 매매 및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추구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투자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투자자산이 모두자신탁인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증권 모두자신탁(주식혼합)'을 통해 투자되며, 모두자신탁은 전세계이머징마켓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은 물론 우량 채권에의

분산투자를 통해 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 운용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재산은 주로 해외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 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증권, 등급이 낮은 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증권은 등급이 높은 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재산은 외화표시 증권 또는 하위 집합투자증권 등의 표시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재량으로 당해 투자신탁이 해당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위험 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위험 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위험 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이머징마켓의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파세에 따른 위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투자 위험 등 자세한 내용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혼합주식형 모투자신탁은 채권 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해당 투자신탁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2011.3.31 기준)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년생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수탁고기준)	
김영민	1964	상무	33	62,817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투신 국제펀드 운용 - 한국투자증권 홍콩현지법인 - 슈로더투신(2007.8 ~) - 운용경력 15년 - 부산대 경영학 학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2) 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	앨런콘웨이(Allan Conway)
운용자산규모	US\$ 29bn('10.12.31 현재)
과거 운용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SF Emerging Markets fund (2004.11 ~ 현재) - SISF BRICs fund (2005.10 ~ 현재) - SISF Latin American fund (2004.11 ~ 현재) - SISF Global Emerging Market Commodities fund(2008.06~ 현재)

(주1)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펀드매니저는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7. 투자실적추이(세전기준)

(1) 연평균수익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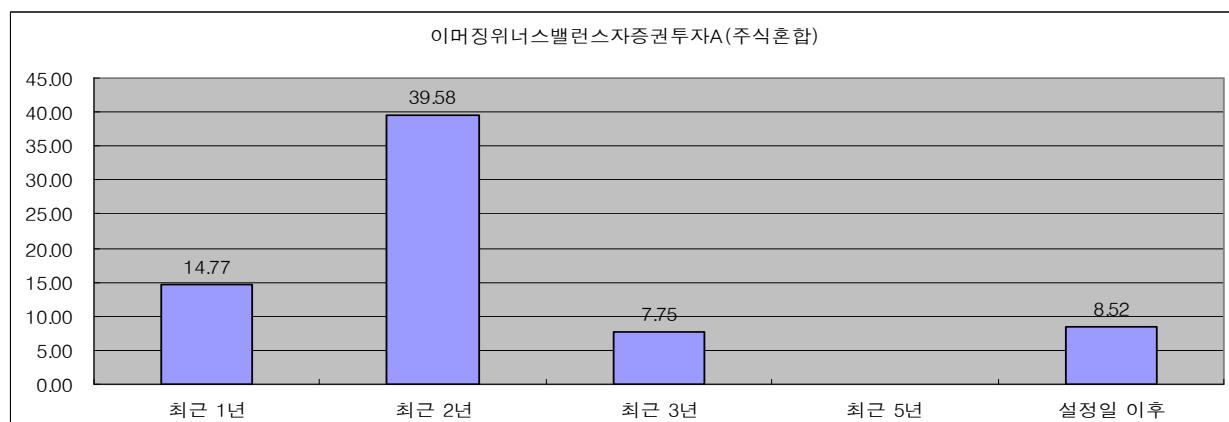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 10.04.01 ~11.03.31	최근 2년 09.04.01 ~11.03.31	최근 3년 08.04.01 ~11.03.31	설정일 이후 07.03.26 ~11.03.31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	14.77	39.58	7.75	8.52

(주1) 이 투자신탁은 참조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은 그레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 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10.04.01 ~11.03.31	09.04.01 ~10.03.31	08.04.01 ~09.03.31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	14.77	69.75	-3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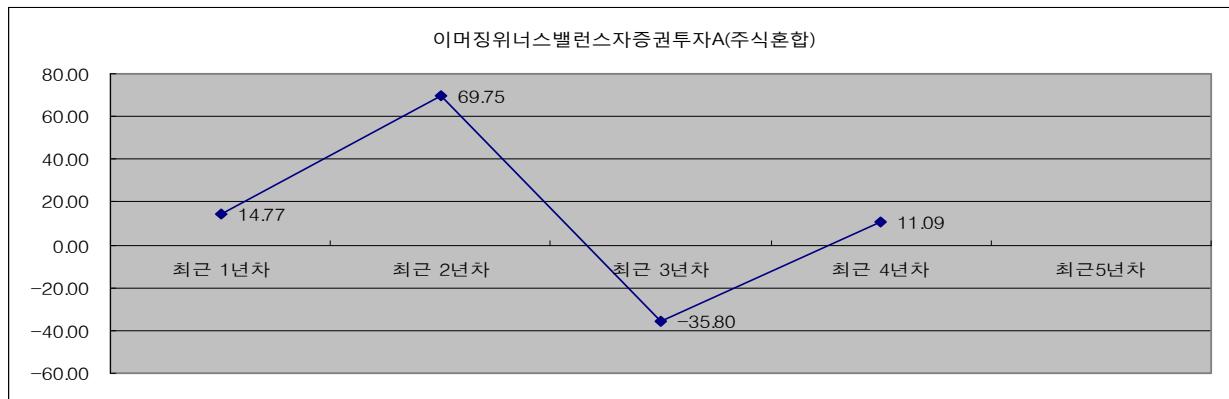
(주1) 이 투자신탁은 참조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2) 마지막 수익률을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 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III 매입·판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법 제76조 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구 종류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A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20%이내	매입시
	판매수수료	없음	
C1, C2, C3, C4, C5, I, F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판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판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1.2%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 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이익금은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개인이 보유한 투자신탁의 평가액에 따른 판매수수료와 실제 부과되는 판매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판매 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A	C1	C2	C3	C4	C5	F	I	
집합투자업자보수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1000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0.0500	0.3000	
신탁업자보수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0.0200	
기타비용	0.0024	0.0025	0.0016	0.0021	0.0023	0.0015	0.0024	0.0024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2.0824	2.4825	2.3816	2.2821	2.1823	2.0815	1.0324	1.2824	-
합성 총보수 · 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 비용 포함)	2.1602	2.5595	2.4606	2.3590	2.2617	2.1747	1.1107	1.3621	-
증권 거래비용	0.5288	0.5346	0.5122	0.4948	0.5094	0.6177	0.5405	0.5219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0.03.26 ~ 2011.03.25]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0.03.26 ~ 2011.03.25]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2011년 5월 현재 설정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만 산출되었으며,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6) 종류F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조건: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내지 제18호는 제외), 10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변액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주 7) 종류I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조건: 50억 이상~100억 미만 개인, 50억 이상~500억 미만 법인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구분	집합투자기구 종류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A	339	789	1,265	2,577
	C1	262	806	1,376	2,923

주 1) 투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 · 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이며, 종류 C1 의 보수비용은 1 년 경과시마다 종류 C2, C3,C4 및 C5 로 전환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 및 총 보수 · 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A 와 종류 C1 의 총 보수 ·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 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2011 년 5 월 현재 설정되어 있는 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의 과세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과세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신탁 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의 상계 방안 시행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협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증권 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판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종류간기준가격 이상이한 이유	투자신탁 간 판매보수 및 수수료·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매일 산정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집합투자업자(http://www.schroder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매입 및 환매 절차 : 판매회사 영업시간에만 가능.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구 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 입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p> <p>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p>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p> <p>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4영업일</p>
환 매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을 지급</p> <p>제1영업일 제4영업일 제9영업일</p>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0영업일(D+9)에 환매대금을 지급</p> <p>제1영업일 제5영업일 제10영업일</p>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주2) 환매의 경우,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전환절차 및 방법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뜻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가.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나.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다.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라. 종류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 마. 보유기간에 따른 종류별 수익증권간 전환은 판매수수료 체계가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간으로 한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3)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4)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

(5)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나.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6) 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가. 상기 (1)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0일에 일괄전환 처리되는 종류 C1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 수익증권부터 종류 C5 수익증권까지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나. 가.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제25조의3 조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가.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증권 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4기(2010.03.26 - 2011.03.25)	삼일회계법인	적 정
제 3기(2009.03.26 - 2010.03.25)	삼일회계법인	적 정
제 2기(2008.03.26 - 2009.03.25)	삼일회계법인	적 정

(단위: 원)

요약 대차대조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2011.03.25)	(2010.03.25)	(2009.03.25)
운용자산	147,000,402,470	287,637,937,976	218,852,167,854
증권	146,896,053,786	287,443,578,491	212,665,681,317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04,348,684	194,359,485	6,186,486,537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657,803,366	6,126,637,824	1,919,195,445
자산총계	148,658,205,836	293,764,575,800	220,771,363,29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992,337,753	4,663,039,576	783,131,583
부채총계	992,337,753	4,663,039,576	783,131,583
원본	129,164,475,981	266,047,471,388	335,037,359,443
수익조정금	-9,021,491,787	-23,998,361,385	5,844,517,284
이익잉여금	27,522,883,889	47,052,426,221	-120,893,645,011
자본총계	147,665,868,083	289,101,536,224	219,988,231,716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2010.03.26 - 2011.03.25)	(2009.03.26 - 2010.03.25)	(2008.03.26 - 2009.03.25)
운용수익	27,523,200,889	138,411,527,603	-120,892,598,011
이자수익	36,321,669	64,333,291	412,583,713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수익(손)	27,486,879,220	138,347,194,312	-121,305,181,724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317,000	91,359,101,382	1,047,000
당기순이익	27,522,883,889	47,052,426,221	-120,893,645,011